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9861
----------	------

제출연월일 : 2021. 5. 3.

제 출 자 : 정 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 구성·설립된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한 등록 제도를 도입하며,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우선협상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한편,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가맹거래사 등록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6(광고·판촉행사의 실시 및 집행 내역 통보)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결한 광고·판촉행사의 약정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판촉행사의 경우에는 해당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및 제2항에 따른 집행내역 통보·열람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를 제14조의3으로 하고,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 등) ①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로 구성·설립된 가맹점사업자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가맹점사업자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1.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만 구성되었을 것
2.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가 가입하였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이하 “등록사업자단체”라 한다)가 그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사업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1항의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스스로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4.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의3(중전의 제14조의2)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가맹본부는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성실하게 그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1. 협의를 요청한 가맹점사업자단체 중 등록사업자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등록사업자단체
2. 협의를 요청한 가맹점사업자단체 중 등록사업자단체가 하나인 경우: 해당 등록사업자단체
3. 협의를 요청한 가맹점사업자단체 중 등록사업자단체가 없는 경우: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

제2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맹거래사의 등록을 해주거나 그 등록을 갱신해줄 때에는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가맹거래사 등록증의 대여 금지 등) ① 가맹거래사는 자기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가맹거래사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가맹거래사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33조제1항 중 “제14조의2제5항”을 “제14조의3제5항”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중 “제14조의2제5항”을 “제14조의3제5항”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의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를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위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변경 등록의 접수 및 그 요건 검토에 관한 업무

제4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가맹거래사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3조제6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2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광고 또는 판촉행사 비용의 집행내역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제43조제7항제2호 중 “제29조제3항”을 “제29조제4항”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고·판촉행사의 실시를 위한 사전 동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위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시정조치 및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의6제1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시정권고를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의6(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집행 내역 통보 또는 열람의 구체적인 시기·방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2조의6(광고·판촉행사의 실시 및 집행 내역 통보)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결한 광고·판촉행사의 약정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판촉행사의 경우에는 해당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및 제2항에 따른 집행 내역 통보·열람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 등) ①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로 구성·설립된 가맹점사업자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가맹점사업자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1.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만 구성되었을 것
2.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가 가입하였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이하 “등록사업자단체”라 한다)가 그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사업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1항의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스스로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4.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①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이하 “가맹점사업자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제14조의3(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삭제>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한다.

④·⑤ (생략)

제29조(가맹거래사의 등록) ①·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가맹본부는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성실하게 그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1. 협의를 요청한 가맹점사업자단체 중 등록사업자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등록사업자단체

2. 협의를 요청한 가맹점사업자단체 중 등록사업자단체가 하나인 경우: 해당 등록사업자단체

3. 협의를 요청한 가맹점사업자단체 중 등록사업자단체가 없는 경우: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

④·⑤ (현행과 같음)

제29조(가맹거래사의 등록) ①·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생략)

<신 설>

제31조(가맹거래사의 등록취소와  
자격정지) ①·② (생략)

<신 설>

③ (생략)

제33조(시정조치) ①공정거래위원  
회는 제6조의5제1항·제4항, 제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  
는 제2항에 따라 가맹거래사의  
등록을 해주거나 그 등록을 갱  
신해줄 때에는 등록증을 내주어  
야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29조의2(가맹거래사 등록증의  
대여 금지 등) ① 가맹거래사는  
자기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가맹  
거래사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가맹거래사의 등록취소와  
자격정지) ①·② (현행과 같  
음)

③ 제1항에 따라 가맹거래사 등  
록이 취소된 사람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반  
납하여야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33조(시정조치) ①-----  
-----





1. (생략)

<신설>

2. (생략)

제41조(벌칙) ① ~ ③ (생략)

<신설>

④ (생략)

제43조(과태료) ① ~ ⑤ (생략)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 (생략)

<신설>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1. (현행과 같음)

2.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변경등록의 접수 및 그 요건 검토에 관한 업무

3. (현행 제2호와 같음)

제41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가맹거래사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43조(과태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1. ~ 6. (현행과 같음)

7. 제12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광고 또는 판촉행사 비용의 집행내역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⑦-----

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  
맹거래사임을 표시하거나 유  
사한 용어를 사용한 자

⑧ (생략)

-----  
-----.

1. (현행과 같음)

2. 제29조제4항-----

-----  
-----

⑧ (현행과 같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안 제39조제2항제2호 신설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변경등록의 접수 및 그 요건 검토에 관한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위탁하는 경우, 해당 위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에 따라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단서 중 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

### 3. 미첨부 사유

안 제39조제2항제2호 신설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변경등록의 접수 및 그 요건 검토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위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다만 현행 법률에 따라 현재에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록 거부 및 공개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3억 4백만 원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지원하고 있음.

따라서 새로운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내 추가 인력 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연평균 비용이 10억 원 미만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됨.

### 4. 작성자

공정거래위원회 강대준 사무관 (044-200-4934)